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34호 2002. 8. 17)

총무위원회
2002. 9. 14(토)

1. 심사경과

가. 2002. 8. 17 사천시장 제출

나. 2002. 8. 19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2. 9. 11. 사천시의회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요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중수)

가. 제안이유

- 유류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천시 실내수영장 이용료(개인단체)를 인상하여 1일회원을 월회원으로 유도함으로써 적자폭 해소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1)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다음에 수영장이용료를 추가삽입
- (2) 수영장 이용료(개인, 단체)를 인상 조정(별표1)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수영장이용료”를 추가 삽입하고, 수영장 이용료 인상은 1999년 7월 5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상수도, 전기요금 상승 등의 인상요인으로 이용료를 1일 회원 이용료만 인상하여 수영장 운영 적자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조례 개정은 현실에 맞고,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